

형법

1. 「도로교통법」상 유추해석금지 원칙에 대한 다음 판례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을 함에 있어 주행연습 외의 목적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기타 다른 목적으로 운전한 경우, 그 운전을 무면허운전으로 보아 처벌할 수 없다.
- ② 적법한 입국심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입국한 경우라 하더라도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96조 제1항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운전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
- ③ 자동차 엔진을 시동시키고 음주운전을 하려 하였으나, 자동차의 고장 또는 결함 등의 원인으로 객관적으로 발진할 수 없었던 상태에 있었던 경우라 할지라도, 이 행위는 음주운전에 해당한다.
- ④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그에 대한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 등이 있는 경우만을 의미한다.

2. 다음 중 정당방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죄를 범한 자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 등으로 사람에게서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 할 때, 이를 예방 또는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한 규정은 ‘침해의 현재성’을 완화한 예외적 규정으로 볼 수 있다.
- ② 경찰관의 불법체포에 대항하는 상황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 ③ 일련의 연속되는 행위로 인해 침해상황이 일시 중단되더라도 추가 침해가 곧바로 발생할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침해의 현재성’이 인정된다.
- ④ 정당방위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방어적 방어만이 인정되고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 방어의 형태는 포함되지 않는다.

3. 다음 중 소급효금지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그 후 피의사실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고 이를 근거로 행정청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철회하였다 할지라도, 운전면허취소 상태에서의 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
- ②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판결 당시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이었다면,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서 정한 면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 ③ 형벌불소급원칙에서 의미하는 ‘처벌’은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형식적 의미의 형벌 유형뿐만 아니라, 범죄행위에 따른 제재의 내용이나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이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형벌불소급원칙이 적용된다.
- ④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집·이용은 수형인 등에게 심리적 압박으로 인한 범죄예방효과를 가진다는 점에서 보안처분의 성격을 지니지만, 소급입법 금지원칙이 적용된다.

4. 다음 중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의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엄격책임설에 의하면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는 금지의 착오에 해당하므로, 착오가 회피 가능했다면 고의범으로 처벌하고 회피가 불가능했다면 책임이 조각된다.
- ②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에 의하면 위법성을 조각하는 행위상황에 대한 착오는 구성요건적 착오가 되어 고의를 조각하게 되고, 행위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범으로 처벌하고 과실이 없으면 무죄가 된다.
- ③ 구성요건적 착오유추적용설에서 구성요건적 고의가 조각된다고 할 때에는, 이에 대한 공범의 성립도 불가능하여 처벌의 흠결을 초래한다.
- ④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은 고의의 불법은 형성되지만 행위 결과에 대한 책임고의가 형성되지 않아, 결국 고의책임 및 고의형벌이 조각되어 법효과에 있어서 금지착오와 같이 취급한다.

5. (가)와 (나)에 대한 다음 <보기>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올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가) 구성요건상 행위로부터 일정한 결과가 야기될 것이 전제된 범죄
- (나) 구성요건의 내용이 결과의 발생을 요하지 않고 법에 규정된 행위를 함으로써 충족되는 범죄

< 보 기 >

- ㉠ (가)에 해당하는 범죄로는 살인죄, 상해죄, 강도죄, 폭행죄, 결과적가중범 등이 있다.
- ㉡ (나)에 해당하는 범죄로는 무고죄, 위증죄,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등이 있다.
- ㉢ (가)와 (나)의 경우,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어야 기수범이 성립한다.
- ㉣ (가)는 과실범이 성립할 수 있으나, (나)는 과실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 ㉤ (가)와 (나)의 경우, 미수범이 성립할 수 있다.

	㉠	㉡	㉢	㉣	㉤
①	X	O	X	X	O
②	O	X	O	O	X
③	O	X	O	X	O
④	X	O	X	O	X

6. 다음 중 방화와 일수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불을 놓아 무주물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무주물’을 ‘자기소유의 물건’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형법」 제167조 제2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 ② 「형법」에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과실일수죄를 범한 자를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
- ③ 「형법」상 방화죄의 객체인 건조물은 토지에 정착되고 벽 또는 기둥과 지붕 또는 천장으로 구성되어 사람이 내부에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공작물을 말하는데, 사람의 기거·취침함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 반드시 사람의 주거에 활용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
- ④ 농촌주택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의 배수관(소형 pvc관)을 토사로 막아 하수가 내려가지 못하게 한 경우, 수리방해죄에 해당한다.

7. 다음 중 법률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고 압류물을 집행관의 승인 없이 관할구역 밖으로 옮기는 행위가 허용되는 행위로 생각하고 이와 같은 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러한 오인에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 ② 「형법」 제16조는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다.
- ③ 법률 위반 행위 중간에 일시적으로 판례에 따라 그 행위가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자신의 행위가 처벌되지 않는 것으로 믿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④ 비디오물감상실업자가 개정된 법이 시행된 이후, 구청 문화관광과에서 실시한 교육에서 ‘만 18세 미만의 연소자’ 출입금지 표시를 업소에 부착하라는 행정지도를 받고, 자신의 비디오 감상실에 18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출입시킨 행위가 법률에 의하여 허용된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8. 다음 중 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한다.
- ② 피고인이 처음보는 여성인 피해자의 뒤로 몰래 접근하여 성기를 드러내고 피해자를 향한 자세에서 피해자의 등 쪽에 소변을 본 경우,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하여도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 ③ 「형법」 개정으로 만 19세인 자가 만 14세인 사람의 자유로운 동의를 받아 성교행위를 한 경우도 처벌된다.
- ④ 피해자를 1회 강간하여 상처를 입게한 후 약 1시간 후에 장소를 옮겨 같은 피해자를 다시 1회 강간한 행위는, 별개의 범의에서 이루어진 행위로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9. 다음 <보기> 중 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보 기 >
- ㉠ 행위자 상호간에 범죄의 실행을 공모하였다면, 다른 공모자가 이미 실행에 착수한 이후에는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동정범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결과적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뿐만 아니라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도 필요하다.

㉢ ‘승계적 공동정범’의 경우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종전의 범행을 알았으면, 자신이 가담하기 이전에 타인이 행한 부분에도 죄책을 진다.

㉣ 판례는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여야 한다고 한다.

㉤ 자기 자신을 무고하기로 제3자와 공모하고 이에 따라 무고행위에 가담하였다 하더라도 무고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10. 다음 중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의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살해의 목적으로 동일인에게 일시·장소를 달리하고 수차에 걸쳐 단순한 예비행위를 하거나 또는 공격을 가하였으나 미수에 그치다가 드디어 그 목적을 달성한 경우, 살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위는 하나의 살인기수죄로 처단할 것이다.

②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 객관적·일률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③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기를 이용하여 전화하면서 고성을 내거나 그 전화 대화를 녹음 후 듣게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보기 어렵다.

④ 범행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할 의도로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경우,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실제 범행에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정한 ‘휴대’에 해당한다.

11. 다음 중 협박과 강요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협박의 경우 해악의 고지자가 제3자의 행위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믿게 하는 명시적·묵시적 언동을 하였다면, 협박죄가 성립한다.

② 같은 집에 세들어 사는 20세의 미혼의 처녀가 자신의 남편과 불륜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이 그 처녀의 아버지와 언니에게 “빨리 일을 해결해야 할 것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처녀를 간통죄로 고소하겠다. 당신 딸이 가정 파괴범이다. 시집을 보내려고 하느냐 안 보내려고 하느냐.”고 말한 경우, 협박죄가 성립한다.

③ 폭행 또는 협박으로 법률상 의무 있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는 폭행 또는 협박죄만 성립할 뿐 강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④ 피해자 주택 대문 바로 앞에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을 주차장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한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차량을 용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으므로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2. 다음 중 업무방해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관리청인 ○○군으로부터 선착장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음이 없이, ○○군의 지시에 따라 선착장 점용허가권자인 마을주민 대표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선착장을 이용하여 선박으로 폐석을 운반하는 업무를 방해한 경우, 위 업무는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하여야 할 대상이 되지 못하는 업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② 어장측에 대한 허위의 채권을 주장하면서 후임 대표자에게 그 인장을 인도하기를 거절함으로써 후임대표자가 예탁금을 인출하지 못하여 어장 소유 선박의 검사를 받지 못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피고인들이 선거권자들로부터 인증번호만을 전달 받은 뒤 그들 명의로 자신들이 지지하는 특정 후보자에게 전자투표를 한 행위는, 경선업무의 적정성을 방해한 경우에 해당한다.

④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폭력·협박은 이에 해당되나, 사회·경제·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13. 다음 중 무고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타인명의를 고소장을 대리하여 작성하고 제출하는 형식으로 고소가 이루어진 경우에, 명의자를 대리한 자가 실제 고소의 의사를 가지고 고소행위를 주도했다라도 그 명의자를 대리한자를 무고죄의 주체로 보아야 한다.

② 경찰관이 甲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상황에서 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乙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는데, 乙이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업무를 방해한 일이 없다며 경찰관을 불법체포로 고소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한다.

③ 고소를 한 목적이 피고소인들을 처벌받도록 하는 데에 있지 않고, 단지 회사장부상의 비리를 밝혀 정당한 정산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무고의 범의가 있다 할 수 없다.

④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사실에 관하여 불기소처분 내지 무죄판결이 내려진 경우에, 그 자체를 무고를 하였다는 적극적인 근거로 삼아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

14. 다음 중 절도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야간에 식당의 창문과 방충망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였으나, 창문과 방충망을 창틀에서 분리하였을 뿐 물리적으로 훼손하여 효용을 상실하게 한 것은 아니라면, 「형법」 제 331조 제1항의 특수절도죄의 손괴에는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② 피해자가 자기 눈에 물을 품어 넣기 위하여 특수한 공작물을 설치하여 저수하였다 하여도, 그 물은 절도죄의 객체가 되지 못한다.

③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밍크 45마리에 관하여 자기에게 그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가져간 데 대하여 피해자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면, 피고인의 주장이 후에 허위임이 밝혀졌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절도죄의 절취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④ 피해자 甲은 매장을 방문했다가 지갑을 떨어뜨렸는데, 피고인이 지갑을 발견하여 습득한 매장주인 乙로부터 “이 지갑이 선생님 지갑이 맞느냐?”라는 질문을 받자, “내 것이 맞다.”라고 대답한 후 이를 교부받아 가지고 간 경우, 피고인의 행위를 절취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15. 다음 중 문서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자신의 부(父) 甲에게서 甲 소유 부동산 매매에 관한 권한 일체를 위임받아 이를 매도하였는데, 그 후 甲이 갑자기 사망하자 甲이 피고인에게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민센터 담당직원에게 제출한 경우, 피고인이 명의자 甲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으로는 사망한 甲의 승낙이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한다.

② 등기명의인이 부동산의 진실한 소유자가 아니어서 그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알면서 그로부터 가장매수하고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양식계의 계장이나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아닌 자가 양식계의 계장 명의의 내수면사용동의 신청서 하단의 계장란에 자신의 이름을 쓰게 하고, 그 옆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인 위 내수면사용동의 신청서 1매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면, 이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

④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동생 A의 이름을 대며 조사를 받다가 휴대용 정보단말기(PDA)에 표시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중, 운전자 A의 서명란에 이름 대신 의미를 알 수 없는 부호를 기재한 행위는 A의 서명을 위조한 것에 해당한다.
16. 다음 중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죄의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사법경찰관리가 직무집행 의사로 위법사실을 조사하여 훈방하는 등 어떤 형태로든지 그 직무집행 행위를 하였다면, 형사피의사건으로 입건 수사하지 않았다 하여 곧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② 구청 공무원이 甲의 부탁을 받고 차적 조회 시스템을 이용하여 乙의 유사회발유 제조 현장 부근에서 경찰의 잠복근무에 이용되고 있던 경찰청 소속 차량의 소유관계에 관한 정보를 알아내 甲에게 알려준 경우, 차량 소유관계에 관한 정보는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③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어떠한 일을 하게 한 때에 상대방이 공무원 또는 유관기관의 임직원인 경우에는, 직무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법령 그 밖에 관련 규정에 따라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이나 기준·절차 등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④ 「형법」상 직권남용죄, 불법체포·감금죄, 폭행·가혹행위죄의 행위주체는 같다.

17. 다음 <보기> 중 법인의 범죄능력과 양벌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8. 다음 <보기> 중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 기 >

㉠ 횡령죄에 있어서 법인이 재물을 보관하는 주체인 경우라도 법인이 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 법인 대표자의 고의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의 고의에 의한 책임이라 할 수 있지만, 대표자의 과실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의 과실에 의한 책임이라고 할 수 없다.

㉢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의 처벌과 관련하여, 자기책임원칙에 비추어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의무를 게을리한 때에 한하여 양벌조항이 적용된다는 입장이다.

㉣ 종업원이 그 영업주의 업무를 수행하며 위법 행위를 한 때, 그 위법행위의 동기가 종업원 기타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에 불과하고 영업주의 영업에 이로운 행위가 아닌 경우, 영업주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① ㉠ ㉡

② ㉡ ㉢

③ ㉠ ㉢

④ ㉢ ㉣

< 보 기 >

㉠ 독일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미국에서 일본화폐인 엔화를 위조한 경우에 대한민국 형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

㉡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형법」 제289조 제1항의 구성요건인 사람을 매매한 행위를 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외국인 甲은 노동력 착취를 위해 자신의 나라에서 외국인 乙을 약취·유인하였다. 그 후 甲이 사업차 한국으로 들어와 머물던 중 이 사실이 발각된 경우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된다.

㉣ 피고인이 태국에서 사기죄를 범하였다가 무죄 취지의 재판을 받고 석방된 후 국내에서 다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경우, 피고인이 태국에서 미결상태로 구금된 1년여의 기간에 대하여는 형에 산입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9. 다음 <보기>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보 기 >
- ㉠ 주류업체 甲 주식회사의 사내이사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주류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민사 분쟁 중, 피해자가 착오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甲 회사명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여 피고인이 이를 보관하게 되었는데, 피해자와 상계 정산에 대한 합의가 없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주류대금 채권액을 임의로 상계 정산한 후 반환을 거부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 일단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업무상 보관 중인 타인의 금전을 횡령하여 범죄가 성립한 이상, 횡령의 범행을 한 자가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고,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그 대등액에서 횡령액에 관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
 - ㉢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동의 없이 함부로 이를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사법(私法)상 그 담보제공행위가 무효이거나 그 재물에 대한 소유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횡령죄를 구성한다.
 - ㉣ 발행인으로부터 일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액면을 보충·할인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액면백지인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보관 중이던 자가, 보충권의 한도를 넘어 보충을 한 약속어음을 자신의 채무변제조로 제3자에게 교부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한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 ① 3개 ② 2개 ③ 1개 ④ 없음

20. 다음 중 과실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과실범의 불법은 객관적 주의의무위반을 통한 행위반가치 및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을 통한 결과반가치에서 찾을 수 있다.
- ②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 하더라도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별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별할 수 있다.
- ③ 과실범에 있어서의 비난가능성의 지적 요소란,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으로서 인식 있는 과실에는 이와 같은 인식이 있고, 인식 없는 과실에는 이에 대한 인식 자체도 없는 경우인데, 과실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전자이고, 후자에 대하여는 그 결과발생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데에 부주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책임을 물을 수 없다.
- ④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의료행위를 하였고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의사가 업무상 과실로 인한 형사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상해와 의사의 설명의무 내지 승낙취득 과정에서의 잘못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